

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5,723,865	16,071,716
일반회계	521,595,057	15,647,852
특별회계	14,128,808	423,864
기타특별회계	14,128,808	423,86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73,840	104,215
의료급여특별회계	819,648	24,589
주택사업특별회계	27,263	818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956,000	28,680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5,411,366	162,341
장흥담관연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40,000	1,200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991,059	89,73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9,600	1,788
장흥군건축진흥특별회계	350,032	10,50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2024년 제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조서"로 같음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6,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은 예산 성립 전 승인 후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